

『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1월 30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12월 22일

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
환경변화에 따른 민원 사항의 개선하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
도모하고 그동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
리한 규정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한 건축물에 여러 업종이 있을 경우,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
내부배관에서 보조계량의 형태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
별도의 배관에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
(안 제6조, 제6조의3)
- 급수장치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 (안 제24조의2)
- 상수도사용료 체납의 권리의무 승계규정(안 제25조의3)

-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의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사용량의 규정을 기존 3가지(15m³, 10m³, 10m³이하)의 경우에서 한가지 규정(15m³범위 안)으로 통일 (안 제32조5항제2,3호)
- 요금납부 “마감일은 25일 또는 말일”을 “25일”로 조정(안 제34조)
- 수도요금을 납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의 기준을 체납액의 “100분의 5”에서 “100분의 3”으로 하향 조정함(안 제37조)
- 수도요금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일시급수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선납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금제도로 변경하고, 납부 대상도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를 포함(안 제39조)
- 요금의 감면제도를 “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할 수” 있도록 수정하고,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및 부과징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1조)
-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, 누수량에 대하여는 “평균사용량이 해당하는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던 것”을 누수량에 대하여 “누수량의 2분의1을 감량하는 것”으로 하여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있도록 함(안 제41조의2)
- 수도계량기의 훼손, 망실 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함(안 제46조)
- 수도계량기 위탁의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조정함 (현행 : 법인 → 개정 : 개인, 법인, 공사, 공단) (안 제50조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0조
- 수도법 제23조, 제51조, 제53조, 제5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 사항의 개선과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써,
- 주요내용으로는
 - 한 건축물에 여러 업종이 있을 경우,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내부배관에서 보조계량의 형태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배관에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.
 - 급수장치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
 - 상수도사용료 체납의 권리의무 승계규정
 -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의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사용량의 규정을 기존 3가지의 경우에서 한가지규정으로 통일
 - 요금납부 “마감일은 25일 또는 말일”을 “25일”로 조정
 - 수도요금을 납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의 기준을 체납액의 “100분의 5”에서 “100분의 3”으로 하향 조정
 - 수도요금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일시급수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선납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금제도로 변경하고, 납부대상도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를 포함
 - 요금의 감면제도를 “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할 수” 있도록 수정하고,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및 부과징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함.
 -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, 누수량에 대하여는 “평균사용량이 해당하는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던 것”을 누수량에 대하여 “누수량의 2분의1을 감량하는 것”으로 하여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있도록 함

- 수도계량기의 훼손, 망실 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함
- 수도계량기 위탁의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, 수요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